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10870	김원이의원	2025.6.16.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5. 9. 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	일부개정법률안	2212383	송재봉의원	2025.8.26.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025. 11. 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에
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
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
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2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물품

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3항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5.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u> <u>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u>

	<u>지급</u> <u>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u> <u>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u> <u>쇄회로텔레비전(CCTV), 비</u> <u>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u> <u>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u> <u>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u> <u>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u>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u> <u>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u> <u>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u> <u>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u> <u>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u> <u>하는 경우 중소기업부령으</u> <u>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u> <u>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u> <u>할 수 있다.</u>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u> <u>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1. ~ 17의3. (생 략)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 1. ~ 17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8. ~ 25. (생 략) ② ~ ⑤ (생 략)	<u>17의5.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u> <u>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지원</u> 18. ~ 2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